

의안번호

382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

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

제출일자 : 2008. 9. 11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

I. 제안이유

- 농업인 전문교육·농기계대여은행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강화 및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
-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987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기술 실증시험포와 우량종자 증식 포장 및 농기계대여은행 확장이 곤란함에 따라
- 첨단 농업시설을 갖추고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「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」으로 농업인 종합복지지원과 지역 농업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
- 친환경농산물 및 소득작물 육성·보급을 통한 농업·농촌의 경제적 향상 및 농촌체험 학습의 장으로서 대전시민의 휴식과 교육 공간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임.

II. 주요내용

(단위 : m², 백만원)

사업명	위 치	규 모(면적)			소요사업비			비고
		토지	건물	기타	계	국비	시비	
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	계	-	4,950	21,630	14,407	3,000	11,407	
	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일원	-	4,950	21,630	14,407	3,000	11,407	

III. 본 문

◇ 사업개요

- 위 치 : 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외 7필지(양묘장부지)
- 규 모 : 부지면적 43,395m² / 건축면적 4,950m²
- 사 업 비 : 14,407백만원(건축비 8,267백만원 / 야외시설공사비 등 6,140백만원)
- 사업기간 : 2009년 ~ 2010년

◇ 사업규모

- 과학영농지원시설(본관) : 지하 1층, 지상 2층 / 연면적 2,310m²
- 시설내용 : 친환경농업관리실, 병해충진단실, 조직배양실, 토양검정실, 농업인강의실, 정보화교육실, 경영상담실, 세미나실, 도서관, 문서고, 업무용 공간 등
- 농업인교육관 : 지상 2층 / 연면적 1,650m²
- 시설내용 : 대강당, 농산물가공교육장, 단체급식실, 농촌지도자, 농업경영인 사무실, 강사대기실 등
- 농기계대여은행 : 지상 1층 / 연면적 990m²
- 시설내용 : 농기계수리·교육장, 부품보관실, 꽃가루배양 및 축산생균제 생산시설
- 야외시설 : 21,630m²
- 시설내용 : 무기동 첨단 하우스, 농가 표준형 자동화 하우스, 체육시설, 병해충 예찰포, 농업생태공원 등

○ 소요사업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규 모	소요 사업비	비고
계		26,580	14,407	
취득(신축)	계	4,950	8,267	
	과학영농지원시설(본관)	2,310	4,389	
	농업인교육시설	1,650	3,383	
	농기계대여은행	990	495	
야외시설공사비 등		21,630	6,140	

Ⅲ. 그동안 추진상황

- '07. 2 ~ '08. 5 :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수렴
- '07. 11 :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(일반회계)
- '08. 5. 6 : 청사이전 후보지 검토 결과 보고
- '08. 6. 5 : 타 기술센터 벤치마킹(정읍시, 김제시)
- '08. 7. : 기본계획 수립
- '08. 9. 4 :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

Ⅳ. 앞으로 추진계획

- '09. 12 : 기본 및 실시설계
- '10. 2 :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
- '10. 4 : 도시계획시설·실시계획 인가
- '10. 4 : 공사발주
- '10. 10 : 공사완공 및 청사이전

Ⅴ. 기대효과

- 과학영농지원시설 확충 및 농기계대여은행 확대로 농업인 불편해소
- 지역 특화작목(배, 포도 등)의 지속적 보존·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로컬푸드시스템 지도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농산물 안전성 증진

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

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상반기			하반기			합 계			비고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1	4,950	8,267	1	4,950	8,267	
		기타									
	1.매입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3.기타 취득	토지										
	건물			1	4,950	8,267	1	4,950	8,267		
	기타										
분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4.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5.양여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6.기타 채분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
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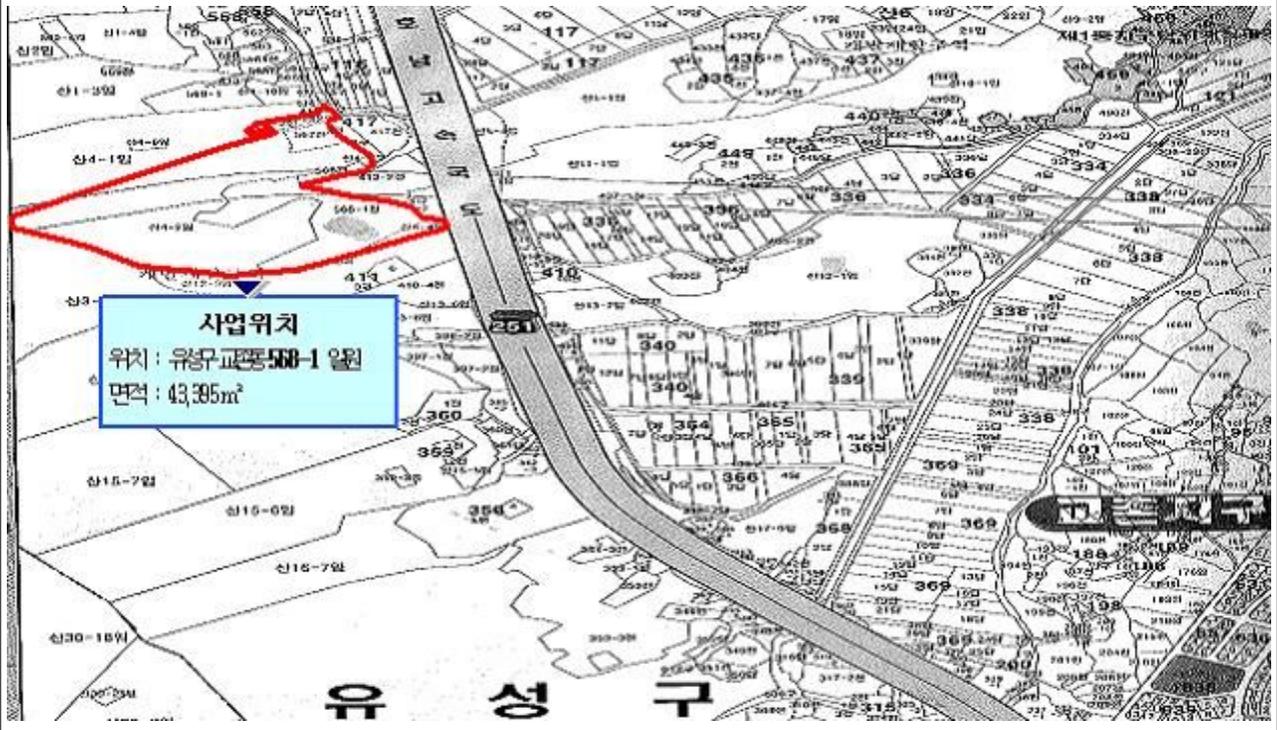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취득 가액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계			4,950	8,267				
1	철근 콘크리트	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일 원	2,310	4,389	2010	신축	대전광역시	
2	철근 콘크리트	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일 원	1,650	3,383	2010	신축	대전광역시	
3	철근 콘크리트	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일 원	990	495	2010	신축	대전광역시	
			이	하	여	백		

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

위치도



전경사진



- 친환경농산물 및 소득작물 육성·보급을 통한 농업·농촌의 경제적 향상 및 농촌체험 학습의 장으로서 대전시민의 휴식과 교육 공간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임.

2. 주요내용

(단위 : m², 백만원)

사업명	위 치	규 모(면적)			소요사업비			비고
		토지	건물	기타	계	국비	시비	
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	계	-	4,950	21,630	14,407	3,000	11,407	
	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일원	-	4,950	21,630	14,407	3,000	11,407	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이환구)

- 본 동의안은 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,
- 유성구 교촌동에 신축예정인 농업기술센터 예정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양묘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, 부지면적 43,395 제곱미터에 건축면적 4,950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하였으며,
- 총 사업비는 144억 7백만원으로 재원마련은 현 청사 등 매각 대금과 균특회계로 충당할 예정임.
- 사업규모는 과학영농지원시설과 농업인 교육관, 농기계 대여 은행, 야외시설 등을 계획하였음.
-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

이전시 과학영농지원시설 확충과 농업인 교육공간 확보, 농가 소득 증대와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,

- 이전 예정부지는 진잠로와 계룡 신도시를 연결하는 대로 2-22 호선인 폭 30 미터 도로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지 단절에 따른 부지활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진잠로에서 연결되는 주진입도로가 호남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함에 따라 통로박스가 좁아 대형버스 운행이 불가능하여 대정동에서 우회해야하는 불편이 있음.
- 본 동의안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농업기술센터)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,
 -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신축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· 답변요지 : 생 략

V. 토 론 요 지 : 생 략

VI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